

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파주시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단원의 남·여 제한을 없애고
단원등의 자격과 전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등 파주시합창단 운
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합창단의 정원은 남·여 제한없이 지휘자, 부지휘자 및 반주자를
제외하고 60명 이내로 하며, 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원
중에서 단장, 총무 각 1인을 두도록 함. (안 제2조)
- 나. 단장은 합창단원 중에서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, 위촉기간은 2
년으로 함. (안 제4조)
- 다. 지휘자, 부지휘자 및 반주자는 음악과 관련된 분야의 정규대학이상
학력소지자, 합창단의 지휘 또는 반주경력이 있는자, 음악관련 단
체로부터 추천을 받은자중 특별전형에 의해 위촉하며, 위촉기간은
2년으로함. (안 제5조)
- 라. 단원은 만 20세이상 45세이하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시민중 공개
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함. (안 제6조)

마. 단장등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와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, 특별한 사유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 및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음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8조)

□ 검토의견

-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음악예술의 육성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단원의 남·녀 제한을 없애고 자격과 전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